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09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김도읍・이헌승・구자근

신동욱 • 조지연 • 서지영

곽규택 · 김희정 · 김정재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함.(안 제294조의4제7항)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4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판장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
록 열람·등사) ① ~ ⑥ (생	록 열람·등사) ① ~ ⑥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⑦ 재판장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
	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
	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
	<u>지하여야 한다.</u>